

건의문



└ 우리 육가공산업의 미래는?

- 미국의 한국육류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한국육가공협회의 결의문
- 육가공제품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
- 중소기업자 범위조정에 대한 건의

미국의 한국육류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한국 육가공 협회의 결의문 ('94. 12. 15)

금번 미국의 냉장육 및 소시지, 멸균유등 품목에 대한 유통기간 연장 압력과 한국내의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통상법 301조 적용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육류시장을 조사하려는 조치에 대해서 당 협회는 제6차 이사회('94.11.25.) 및 1차 포장육 분과위원회에서 한국육류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해명서에 의거 결의문을 채택하여 통상법 301조 적용조사는 중단토록 관계요로에 건의(보고) 및 요구하였다.

우리는 금번 미국이 냉장육 유통기한 연장 과 소시지 멸균유등 품목에 대한 연장 압력에 대하여 미국측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며 결의문을 채택한다.

1. 우리는 미국측이 우리나라에서 비현실적인 냉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행사하는 미육류업체의 통상법 301조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육류시장을 조사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미국등이 주장하는 소시지 멸균유등의 품목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기한 연장에 대하여 모든 육제품이 우리의 기술, 기호, 국익에 맞도록 과학적 실험성적등에 의거 제조 가공하여 유통할 것인 바 미국의 일방적인 가열 냉동 소시지 유통기간을 180일, 냉장육 쇠고기 100일, 돼지고기 40일로 연장 요구함은 엄연한 강압적인 내정 간섭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3. 한국 육가공 협회는 정부에서 지시한 현 SBS제도하의 원료육을 햄, 소시지 이와 유사

한 가공품의 원료육용으로 개발하고 포장육도 우리 기호에 맞도록 절단, 성형하고 포장하여 판매할 것인 바, 미국의 생산자 단체, 가공업자, 공급자(국내외)등은 우리 협회의 입장을 왜곡선전하여 한국내 육류업체간의 마찰을 유도하여 실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 우리는 개발된 육가공 제품과 절단한 포장육으로 판매함에 있어 자사의 라벨과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여 판매하는 주체성 육가공업체로서의 산업을 원하며 외국제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무역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미국측이 국내 육류의 유통체계 간섭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압력을 가증할 경우 전국 축산업 종사 농민과 함께 미국 제품 불매운동등 반미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미국의 한국 육류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육가공 협회의 해명서

94.10.7 SBS 수입 쇠고기 한미간 협상 및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압력 차원의 301조 적용제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한국 육가공 협회는 제6차 이사회(11.25)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고 또한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1. 소시지 유통기한이 축소된 것(90일에서 30일로)과 관련 180일로 연장 요구에 대하여

가. 금년 초에 가열 냉동 소시지를 미국 등에서 자유로이 수입했으나 국내 식품 위생법에 저촉되어, 수입된 소시지를 반송(통관 거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측에서 무역의 장애조치라고 항의한 바 있고 이 항의에

대하여 한국 육가공 협회에서는 미국 육류 수출협회와 주한 미국 대사관측에 수입국의 식품 위생법에 저촉됨으로써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 무역장애가 된다는 항의는 내정 간섭임을 통보한 바 있음.

나.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소시지는 냉장소시지로 유통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비가열 냉동 소시지로 유통되는 것은 극소수이며 미국측은 냉동 소시지를 수출하고자 이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현재 보사부에서는 가열 소시지의 유통기간이 식품 공정에 설정안된 것을 비가열 냉동 소시지와 같이 90일까지로 새로 설정하여 입법예고하고 있음.

라. 한국내 실정에 맞는 유통구조와 기술수준, 시설등 각종 요인과 소비패턴을 감안한 조치를 취해 자국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하나 미국측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가열 냉동 소시지 유통기간을 180일로 연장 요구함은 단지,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 파렴치한 행위의 소산이며 한국정부를 알보고 자행하는 내정간섭행위라고 사료된다.

2. 육가공 협회가 SBS 제도로 수입하는 육류를 가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요구에 대하여

가. 수입하는 육류를 가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육가공 업체들은 재가공, 재포장 없이 수입 BOX육 원상태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비용절감, 물류 취급면에서 용이하나 그 효과는 원가의 1.7%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를 허용시는 당초 정부가 육가공 협회를 SUPER-GROUP에 참여시킨 명분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시는 단순무역행위가 됨을 육가공 업체는 잘 알고 있음.

나. 육가공 업체의 일부 중소기업체의 경우,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육가공 협회에 대

해서도 타 SUPER-GROUP과 같이 재가공, 재포장 없이 수입 포장 상태로 판매허용을 해 주도록 U.S MEF 관계자에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U.S MEF의 입장에서는 이들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의견을 중시하지는 않았을 것임.

다. 육가공 협회 대기업 회원사의 경우,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 있으며, 미국측 요구대로 시행시 국내 업체는 미국의 단순판매 대리점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며 육가공품 및 생육 육류시장에서 자사 브랜드를 알리고 정착시켜야 할 우리 육가공 업체로서는 자사 브랜드를 포장 및 BOX에 명기하여 유통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국내 육류시장에서의 시장 확대의 선전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라. 참고사항으로 '94년 초에 수입된 소시지를 반송할 당시 강력히 항의하고 정보를 제공한 자들은 우리나라의 무역상(냉동 소시지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입상 포함)들이었으며, 쇠고기의 국내 AGENT로서 미국에 공급회사 또는 육가공 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 법인체는 11개 회사가 수입육류를 가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요구할 요소가 많음.

마. 당 육가공 협회는 회원사 자체 브랜드로서 국내시장 확대 확보 차원에서도 현 SBS 제도하의 원료육을 농림수산부가 정한 햄, 소시지 이와 유사한 가공품의 원료육용과 절단, 성형한 포장육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는 어떠한 포장방법 변경도 일체 요구하지 아니한다.

3. 냉장 쇠고기 유통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0일까지 연장요구에 대하여

가. 우리나라에서는 진공포장 상태로 거래도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식품 공전상 일반 냉장육의 유통기간을 쇠고기 14일, 돼지고기 10일을 적용하고 있고, 진공포장 냉장육에 대한 유통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은 현실적으로 진공포장된 냉장육의 무역 거

래에 장애가 된다하여 유통기간을 쇠고기 100일, 돼지고기 40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진공포장 냉장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미국측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진공포장한 냉장육의 유통은 미국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자, 공급자(국내외)등이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판매 전략을 펴고 있으며 또한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은 현실이며 일본의 경우 수입 자유화후 냉장 쇠고기(진공포장육)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험을 되살려 우리나라에도 냉장육수출을 위한 무역 압력을 자행하고 있는 행위라 사료되며 이 냉장육유통기한 연장요구는 분명히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 행위라 사료된다.

4. 기타 문제에 대하여

(1)냉동쇠고기 햄버거육의 유통기한이 현재 30일로 된 식품공전 규정에서 삭제되어 있고

(2)현행 14~28일 간의 수입육검사 절차 단축요구

(3)축협, 한농의 수입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중량포장 의무부과등은 부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가. 쇠고기(육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냉장 상태로써 양질의 육류를 유통하는 것이 상례이며, 선진 외국은 이 냉장 상태로 원거리 소비자까지 공급 또는 외국에 수출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발달한 진공 포장을 하여 냉장육으로 공급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육질을 유지해야 하는 바, 유통기간 연장, 진공포장 상태의 유통, 검역기간 단축, 판매 구조 개선이 필수여건임.

나. 이러한 일련의 요구사항은 냉장육의 유통(수출)조치로서 미국의 슈퍼 301조 제소는 수입국인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강대국의 횡포이며 내정 간섭임을 우리 육가공 협

회는 단정하며 전국 축산업 종사 농민과 함께 미국제품 불매운동 등 반미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해명 및 결의문

94.10.7 SBS 수입 쇠고기 한·미간협상 및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압력 차원의 301조 적용 제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한국 육가공 협회는 제6차 이사회(11.25)에서 다음사항을 해명하고 또한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1. 소시지 유통기한이 축소된 것(90일에서 30일로)과 관련 180일로 연장 요구에 대하여

가. 금년 초에 가열 냉동 소시지를 미국 등에서 자유로이 수입했으나 국제 식품 위생법에 저촉되어, 수입된 소시지를 반송(통관 거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측에서 무역의 장애조치라고 항의한 바 있고 이 항의에 대하여 한국 육가공 협회에서는 미국 육류 수출협회와 주한 미국 대사관측에 수입국의 식품 위생법에 위배됨에도 무역장애가 된다는 항의는 내정 간섭임을 통보한 바 있음.

나.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소시지는 냉장소시지로 유통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비가열 냉동 소시지(90일간)로 유통되는 것도 있으나 미국측은 가열 냉장소시지를 냉동하여 수출하고자 이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현재 보사부에서는 비가열 냉동 소시지외에 가열 냉동 소시지의 유통기간을 90일까지로 입법 예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협회의 의견은 냉동 소시지는 가열여부에 상관없이 90일로 동일해야 한다고

사료 된다.

- 가열 냉장 소시지의 유통기간 현 30일
- 비가열 냉동 소시지의 유통기간 현 90일
- 가열 냉동 소시지의 유통기간 현 90일로
입법예고

다. 육가공 협회에서는 서울 보건 대학원 및 건국대 동물자원 CENTER에서 6개월간의 육가공품 유통기간 실험 결과에 따라

- (1) 햄·소시지의 유통기간을 현 30일에서 45~50일로 연장 요구했고,
- (2) 베이컨의 유통기간을 현 15일에서 25일로 연장 요구했으며,
- (3) 진공 포장한 냉장육은 앞으로 실험결과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을 요구할 계획임.

2. 육가공 협회가 SBS제도로 수입하는 육류를 가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요구에 대하여

가. 수입하는 육류를 가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육가공 업체들은 재가공, 재포장 없이 수입 BOX육 원상태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비용절감, 물류 취급면에서 용이하나 그 효과는 원가의 1.7% 수준으로 미미하며(총비용 W116/KG:운반비 W16, 재가공인건비 W50 재가공 수율차 W21, 포장비 W29), 이를 허용시는 당초 정부가 육가공 협회를 SUPER-GROUP에 참여시킨 명분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시는 무역행위가 됨을 육가공 업계는 잘 알고 있음.

나. 육가공 업체의 일부 중 소업체의 경우,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육가공 협회에 대해서도 타 SUPER-GROUP과 같이 재가공, 재포장 없이 수입 포장 상태로 판매허용을 해주도록 U.S MEF 관계자에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U.S MEF의 입장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의견을 중시하지는 않았을 것임.

다. 육가공 협회 대기업 회원사의 경우, 미국측 요구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

미국측 요구대로 시행시 국내 업체는 미국의 단순판매 대리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육가공품 및 생육 육류시장에서 자사 브랜드를 알리고 정착시켜야 할 우리 육가공 업체로서는 자사브랜드를 포장 및 BOX에 명기하여 유통함으로써 향후 육류시장에서의 시장 확대의 선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라. 냉장육 수입유통의 경우에서는, 한국의 현 체계상 냉장육을 유통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냉장육을 유통시킬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부패한 고기를 공급할 요소가 있으며,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로 인한 효과에 비해서 손실이 많고, 특히 국산육의 마지막 유일한 차별적 요소가 상쇄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함.

마. 따라서, 당 육가공 협회는 현 SBS제도하의 원료육을 햄, 소시지, 이와 유사한 가공품의 원료육용과 절단, 성형한 포장육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는 일체 요구하지 아니함.

3. 냉장 쇠고기 유통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0일까지 연장요구에 대하여

가. 선진 외국의 쇠고기(육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냉장 상태로 양질의 육류를 유통하는 것이 상례이며, 원거리 소비자 또는 수출을 위해서도 과학적으로 발달한 진공 포장을 하여 냉장육으로 육질을 유지하여 냉장육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나. 우리나라에서는 진공포장 상태가 거래도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식품 공전상 일반 냉장육의 유통기간을 쇠고기 14일, 돼지고기 10일을 적용하고 있고, 진공포장 냉장육에 대한 유통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은 현실적으로 진공포장된 냉장육의 무역거래에 장애가 되므로 유통기간을 쇠고기 100일, 돼지고기 40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진공포장 냉장육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미국측 요구의 타당성

■ 건의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일본은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전에는 냉동 쇠고기를 많이 수입 하였으나 수입 자유화 후에는 반대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냉장 쇠고기(진공 포장육)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도 점차 이러한 추세로 변천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라. 따라서 미국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자, 공급자(국내·외)등이 진공포장한 냉장육 판매 전략으로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

마. 그러나 우리나라는 냉장육 판매조직, 검역조직, 냉장육 유통 체계가 미비하므로 현재는 진공 포장한 냉장육 유통은 곤란하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진공포장 고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으며, 당 협회에서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

4. 기타 문제에 대하여

가. 냉동쇠고기 햄버거육의 30일로 된 유통기한이 식품공전 규정에서 삭제되어 있고

나. 현행 14~28일 간의 수입육 검사 절차 단축요구

다. 축협, 한냉의 수입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증량포장 의무 부과등은 부당한 수입장벽이라고 301조로 청원 제출함은 CHILLED MEAT를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사료됨.

라. 참고사항으로 '94년 초에 수입된 소시지를 반송할 당시 강력히 항의하고 정보를 제공한 자 들은 우리나라의 무역상(냉동 소시지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입상 포함)들이었으며, 쇠고기의 국내 AGENT로서 미국에 공급회사 또는 육가공 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 법인체는 11개 회사임.

보건사회부에 육가공제품 유통기한 연장건의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육가공제품의 유통기간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저장가공의 선

1. 실험실시기관 및 실험방법

구 분	행	소 시 지	베 이 킨
실험실시기관	건국대 동물자원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 식품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천제 박사	이용옥 박사	이성기 박사
실험기간	'94.3~'94.8	'94.3~'94.8	'90.7~'90.11
연구보고서 제출일	'94.8.15	'94.8.15	'90.11
실험의뢰 업체수	9개사	9개사	3개사

2. 실험 성적 요약

구 분	행	소 시 지	베 이 킨
가열 조건	가열제품	가열제품	비가열제품
유통가능기간	60일	60일	25일
ph 값	6.43	6.22~6.31	5.11~6.32
수분활성도	0.974	0.95	
VBN	6.12mg%	11.86mg%	19.0~36.8mg%
TBA값	0.59	0.30	0.126~0.477
일반세균수	10 ⁵ CFU/g	10 ⁵ CFU/g	10 ⁷ CFU/g
대장균군	음성	음성	양성

■ 건의문

진적 위생처리와 과학적인 포장지, 포장방법 등의 개량개선등으로 국제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식품공전상의 육가공제품 유통기간은 부적절하므로 식품 공전 제3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중 4.제조, 가공기준에 의거 공신력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건국대학 동물자원센터에서 과학적방법으로 우리 육가공협회 9개 회원사의 육가공제품(햄, 소시지, 베이컨)유통기간에 관한 실험을 의뢰하였다.

의뢰한 실험결과, 햄, 소시지는 60일간, 베이컨은 25일간 유통이 가능한 실험성적이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육가공제품의 유통기한을 실험성적에 의거 햄, 소시지는 45~50일간, 베이컨은 25일간 연장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중소 기업자 범위조정에 대한 건의 (94. 12. 20)

상공자원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흥하여 중소기업이 자율과 경쟁기반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법률은 94년내로 개편을 추진하며, 95년 상반기중 각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 개정할 예정으로 현행 상시 근로자 수와 자산규모, 매출액을 참작하여 그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인 독립기업에 중소기업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 당협회는 아래 건의안과 같이 건의하였다.

가. 범위 조정안

	현 행	조 정 요 청
상시 근로자수(명)	300명	500명
자산총액(억원)	250억원	300억원
매출액(백만원)	-----	800억원

나. 조정 필요성

◦ 상시근로자수 조정건의안

중소기업자 범위조정 중 상시근로자수 현행 300명 이하를 500명 이하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가 에서 300~500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5개 정도임.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대기업의 판촉강화에 따라 경쟁력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리점이나 중간도매상과의 거래도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이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촉여사원의 숫자를 늘려야 함에 따라 실제 제조에 고용되는 인원은 300인 이하이나 판촉여사원의 숫자로 대기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 자산 총액에 대한 조정건의안

토지 및 물가상승 작용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현행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을 요한다.

◦ 매출액에 대한 조정 건의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와 평균적으로 자산총액의 2.5배 정도의 매출 실적으로 인해 매출액 상한선을 800억원으로 요한다.

음식류품 제조업 (15119)

관련단체	한국육가공협회(T)588-1264
회원사 수	58 개사
조사 업체 수	45 개사

1.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상 중소기업자 범위

- 상시종업원수: 21~300명
- 자산총액 규모: 250억원

■ 권의문

2. 업종 개요

구분	단위	'90	'91	'92	'93
사업체수	개사	243	309	398	471
근로자수	천명	14	18	23	25
생산실적	백만원	786,002	854,921	1,135,082	1,132,721
비제조업은 매출액)					
수출실적	백만\$	15	17	18	30

(주): 비회원사를 포함한 업종전체의 해당수치를 기재

가. 상시 근로자수(주주인 임원 및 일용 근로자는 제외)

(단위: 45개사)

상시근로자수	'90	'91	'92	'93	상시근로자수	'90	'91	'92	'93
5인 이하	1(2.2)				401-500인			2(4.4)	2(4.4)
5-20인	12(26.7)	12(26.7)	7(15.6)	5(11.1)	501-600인				
21-50인	18(40.0)	12(26.7)	13(28.9)	8(17.8)	601-700인				1(2.2)
51-100인	6(13.3)	10(22.2)	10(22.2)	12(26.7)	701-800인	2(4.4)	2(4.4)	1(2.2)	1(2.2)
101-200인	1(2.2)	2(4.4)	5(11.1)	5(11.1)	801-900인	2(4.4)	2(4.4)	2(4.4)	2(4.4)
201-300인	1(2.2)	2(4.4)	1(2.2)	4(8.9)	901-1,000인	1(2.2)	1(2.2)	1(2.2)	1(2.2)
301-400인	1(2.2)	2(4.4)	2(4.4)	3(6.7)	1,000인 이상			1(2.2)	1(2.2)
계	45(100)	45(100)	45(100)	45(100)					

(주): 1. ()내는 구성비% 2. 작성자료근거: 육가공협회 가입 신청 서류

나. 자산총액규모 (사업연도기간 종료일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 가액의 합계액)

(단위: 45개사)

자산총액	'90	'91	'92	'93	자산총액	'90	'91	'92	'93
5억원 이하	3(6.7)	2(4.4)	1(2.2)		351-400억원				
6-10억원	10(22.2)	7(15.6)	7(15.6)	4(8.6)	401-450억원				
11-50억원	16(35.6)	17(37.8)	12(26.7)	11(24.4)	451-500억원				
51-100억원	8(17.8)	8(17.8)	9(20.0)	10(22.2)	501-550억원				
101-120억원	2(4.4)	3(6.7)	6(13.3)	7(15.6)	551-600억원				
121-150억원	1(2.2)	2(4.4)	3(6.7)	4(8.9)	601-650억원				
151-200억원	1(2.2)	1(2.2)	2(4.4)	4(8.9)	651-700억원				
201-250억원					701-750억원	1(2.2)		1(2.2)	
251-300억원					801-850억원	1(2.2)	1(2.2)	1(2.2)	2(4.4)
301-350억원					851-900억원	1(2.2)	2(4.4)	1(2.2)	2(4.4)
					901억원 이상	2(4.4)	2(4.4)	2(4.4)	1(2.2)
계	45(100)	45(100)	45(100)	45(100)					

(주): 1. ()내는 구성비% 2. 작성자료 근거: 협회 회원사 가입 신청서류

■ 건의문

<자료 1-2>

(단위: 45개사)

유형고정자산	'90	'91	'92
10 백만원 미만			
10-49 백만원			
50-99 백만원	3(6.7)	2(4.4)	2(4.4)
100-299 백만원	5(11.1)	6(13.3)	5(11.1)
300-499 백만원	12(26.7)	13(28.9)	12(26.7)
500-999 백만원	16(35.6)	14(31.1)	15(33.3)
1,000-4,999백만원	5(11.1)	5(11.1)	6(13.3)
5,000-9,999백만원	3(6.7)	3(6.7)	3(6.7)
10,000 백만원 이상	1(2.2)	2(4.4)	2(4.4)
계	45(100)	45(100)	45(100)

(주): 1. ()내는 구성비 %

2. 작성 자료 근거: 협회 가입 신청서류

다. 매출액 기준

(단위: 45개사)

매출액	'90	'91	'92	'93
50 백만원 이하				
51-100 백만원	2(4.4)	2(4.4)	1(2.2)	
101-500백만원	8(17.8)	7(15.6)	6(13.3)	2(4.4)
501-1,000백만원	10(22.2)	8(17.8)	7(15.6)	4(8.9)
1,001-2,000백만원	15(33.3)	12(26.7)	6(13.3)	5(11.1)
2,001-3,000백만원	2(4.4)	2(4.4)	4(8.9)	7(15.6)
3,001-4,000백만원	2(4.4)	2(4.4)	2(4.4)	4(8.9)
4,001-5,000백만원	1(2.2)	1(2.2)	4(8.9)	5(11.1)
5,001-6,000백만원		3(6.7)	4(8.9)	5(11.1)
6,001-7,000백만원		1(2.2)	2(4.4)	
7,001-8,000백만원	1(2.2)			
8,001-9,000백만원			1(2.2)	2(4.4)
9,001-10,000백만원	1(2.2)	1(2.2)	2(4.4)	2(4.4)
10,001-20,000백만원		2(4.4)	1(2.2)	2(4.4)
20,001-30,000백만원				1(2.2)
30,001-40,000백만원				
40,001-50,000백만원				
50,001-60,000백만원				
60,001-70,000백만원	1(2.2)	1(2.2)	2(4.4)	2(4.4)
70,001백만원 이상	2(4.4)	3(6.7)	3(6.7)	3(6.7)
계	45(100)	45(100)	45(100)	45(100)

(주): 1. ()내는 구성비%

2. 작성자료근거: 협회 가입 신청 서류

